

[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5-3호]

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일부 개정 공고

○ 일부 개정 사항

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5-2호('25.3.19) '2025년 한우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공고'의 '지원대상 품목'과 '사업 내용'의 '지원 기준' 내 등급기준을 한우자조금 한우자유 332-73호('25.4.30)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함

구 분	당 초	변 경
□ 지원대상 품목	○ 수출용 한우고기	○ 수출용 한우고기 및 가공육 - 가공육은 한우 함유량이 70% 이상, 원료육은 한우 100% 사용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
□ 지원기준 ○ 등급 기준	○ 1+등급 이상	○ 구이용 : 1등급 이상 ○ 구이용 외 : 전 등급
□ 신청서류	○ (최초 1회) 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, 등기 부등본 각 1부	○ (최초 1회) 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, 등기부등본, 품목제조보고서 각 1부 - 품목제조보고서는 가공육에만 해당되며, 원료육은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소고기 함량 확인을 위해 육류의 함유량 표기가 되어야 하고 그 외에 첨가물 등에 함량은 미표시 가능

○ 적용시점

- 등급기준 : '25. 4. 30 ~ '25. 12. 31일까지 한시적 적용
- 지원대상 품목 : '25. 4. 30 ~

2025년 5월 7일

한 우 자 조 금 관 리 위 원 장
(사)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